

광양와우지구 중흥S-클래스 특별공급(생애최초)당첨자 구비서류 안내

● 특별공급(생애최초)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- 당첨자께서는 정당계약 이전 서류제출 일정 예약 후 (www.gy-sclass.com)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에 부적격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등본상 거주지역, 주택소유, 배우자 분리세대 등)
- ※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전 서류접수 예약된 일시에만 당첨자와 동반1인까지(대리인 접수 가능)출입이 가능하며, 입산부, 노약자 및 만성질환 환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특별공급(생애최초)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서류 (특별공급)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약서	본인	• 접수 장소에 비치 • 특별공급 인터넷청약(한국감정원 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직접 신청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으로 청약 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8.2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(출입국 기록없을시 N)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 (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)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	본인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(발급처: 해당직장/세무서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•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·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)
	○		소득세납부입증서류	본인	•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비속	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비속	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(※ 서류미비시 접수 불가)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-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설명
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